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공고제 2023-441 호)에 대한 의견서

2024. 1. 2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수 신	국방부장관
발 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외 43 개 단체)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외 5 개 단체)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007 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연대체로서, 현재 총 44 개의 성소수자 인권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2008 년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차별법령 개정 및 인권정책을 마련하며, 군대 내 성소수자 복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된 성소수자 인권단체, 공익인권 법률가 단체, 반성폭력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공동으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공고제 2023-441 호) 중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102 의 3.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 항목에 대하여 첨부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첨부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공고제 2023-441 호) 중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102 의 3.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 에 대한 의견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공고제 2023-441 호)
중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102 의 3.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 에 대한 의견서**

1. 대상 개정령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 최신 의료기술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가운데,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

2) 개정내용

102 의 3.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 주 : <u>초·중·고등학교생활기록부</u>, 정밀심리검사결과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으로 성별불일치 상태가 확인된 사람 가운데 사회적 변화나 신체적 변화로 판단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u>진단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과거력과 현재 증상이</u> <u>지속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동반된</u> <u>경우</u> 다. <u>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6 개월 이상의 규칙적인</u> <u>이성호르몬치료 등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u> <u>변화나 신체적 변화로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u> <u>판단되는 경우</u>	7 4 5	7 4 5
--	----------------------------	----------------------------

2.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1) 의견의 요지 : 개정 반대

- 위 개정령안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한 국제의학계와 인권규범에 따른 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호르몬치료 여부로 자의적으로 트랜스젠더의 삶을 나누고 있고, 그

결과 이미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대함

2)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의 변천 과정

-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는 1999 년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의 하위 범주로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를 규정하고 이를 경도 3 급, 중등도 4 급, 고도 5 급으로 급수를 구분함
- 이후 2018 년에는 중등도 단계를 삭제하고 경도 4 급, 고도 5 급의 2 단계로만 급수를 나누었고, 2021. 2. 1.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인 현행 법령에서는 ‘성주체성장애’를 ‘성별불일치’로 개정하고, 경도 기준을 삭제하여 고도인 경우 5 급 판정만을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 이와 같이 2021 년 성별불일치로 판정 기준이 개정된 것은 2019 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제 11 판 개정을 통해 ‘성주체성장애’를 ‘성별불일치’로 변경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3) 성별불일치의 의미

-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 제 10 판까지는 ‘성전환증(transsexualism)’,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라는 진단명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정신장애로 분류하였으나, 2019 년 ICD 제 11 판에서 이러한 정신장애 분류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낙인을 가져온다고 보아 진단명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
-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 제 11 판에서 성별불일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¹

¹ WHO, ICD-11 for Mortality and Morbidity Statistics (Version : 01/2023)
<https://icd.who.int/browse11/l-m/en#/http%3a%2f%2fid.who.int%2fid%2fentity%2f90875286>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

상위항목

17. 성건강 관련 상태

설명

성별불일치는 개인이 경험하는 성별과 출생 시 지정된 성별 사이에 뚜렷하고 지속적인 불일치로 특징지어진다. 변칙적인 성적 행동이나 선호만으로는 해당 진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즉, 성별불일치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에 대한 선호나 일시적인 행동을 넘어 지속적이고 뚜렷한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성별불일치를 경험하는 사람 중 일부는 호르몬치료, 성전환수술 등 외과적 수술을 통해 신체외관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이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느끼는 '성별불쾌감(gender dysphoria)'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성별불일치 상태에 있는 트랜스젠더 중에도 정신과적 진단 외에 별도의 의료적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음

3) 개정령안의 문제점

(1) 6개월 이상의 호르몬치료라는 자의적 기준

- 개정령안은 그간 성별불일치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5 급 판정을 하던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여, '성별불일치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확인되는 사람 중 6개월 이상의 이성호르몬치료를 규칙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5 급 판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 급 판정을 하고 있음. 즉, 개정령안은 이전과 같이 '경도', '고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호르몬치료를 받는지 여부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판정 기준을 나누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성별불일치는 개인이 경험하는 성별과 출생 시 지정된 성별 사이에 뚜렷하고 지속적인 불일치를 경험하는 경우에 판정이 되는 것이지

호르몬치료를 지속하였는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님. 트랜스젠더 중에는 이미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그에 맞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호르몬치료 등 의료적 조치를 받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음

- 실제로 2020 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트랜스젠더 혐오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참여자 589 명 중 28 명(2.8%)가 “과거에는 호르몬치료를 받았으나 지금은 중단했다”고 답했고, 311 명(52.8%)가 “호르몬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함. 그리고 이렇게 호르몬치료를 중단했거나 하지 않은 이유로 응답자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50.9%)’,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6%)’,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32.0%)’라고 답함²
- 이처럼 이미 성별불일치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 등이 있음에도 내외부적 이유로 호르몬치료를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많이 있음. 특히 호르몬치료의 경우 현재 한국에서 전면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어 경제적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그럼에도 호르몬치료를 기준으로 판정 기준을 나누는 개정령안은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한 국방부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임

(2) 4 급 판정으로 트랜스젠더가 겪는 어려움

- 한편 개정령안은 성별불일치가 확인된 트랜스젠더에 대해 3 급 현역처분은 없이 최대 4 급 보충역 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권 침해 정도가 적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4 급 판정을 받은 경우 비록 현재는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트랜스젠더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음. 현재 법적으로 남성에게만 병역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 역시 복무하는 기관에서 남성으로 인식되고 대우받을 수밖에 없음. 즉, 개정령안에 따르면 이미 성별불일치를 경험하고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가 남성으로서 1 년 9 개월 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해야 하는 것임

² 홍성수 책임(2020),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263.

- 결국 개정령안은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인지되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 대상으로 신체적 기준 및 시설이 설계된 배치, 교육, 복무 환경에 부적절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그러한 차별의 결과 트랜스젠더들은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겪어야 함
- 또한 5 급 전시근로역과 달리 4 급 보충역의 경우는 예비군 훈련이 부과되어, 소집해제가 된 후에는 6 년 간 군부대에서 군복을 입고 다른 남성 예비역들과 함께 훈련을 받아야 함. 이 역시 이미 여성으로 일상,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트랜스젠더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안겨주며, 자신의 정체성을 원치 않게 드러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또 다른 혐오와 폭력을 경험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개정령안과 같이 호르몬치료를 기준으로 4 급과 5 급을 나누는 것은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조치일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함

(3) 외국의 사례

- 외국의 경우 한국과 같이 법적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거의 없기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그러나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호르몬치료나 외과적 수술 없이 정신과 진단만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르몬치료를 기준으로 판정 기준을 나누는 개정령안의 취지는 트랜스젠더 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2018 년 실질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했던 대만의 경우 그전까지 ‘체위구분표준(體位區分標準)’을 통해 병역판정을 하였는데,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심리이상’으로 분류하면서 정신과 진단을 받거나 성전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역, 즉 한국의 5 급과 같은 판정을 하였음. 이러한 외국 사례에 비추어보아도 개정령안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임

정신과	
	189 항

	성심리이상(性心理異常)
상비역 등급	
대체역 등급	
면제 등급	1. 진단을 거쳐 성심리이상 확정을 받은 사람 2.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
등급 미정	
비고	1.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2. 성심리이상은 심리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만 체위구분표준(體位區分標準, 民國 112 年 05 月 30 日)>

4) 결론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3. 16. <트랜스젠더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내고, “트랜스젠더를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고 혐오와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통계청장에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³
- 그럼에도 이번 개정령안은 여전히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정신장애로 바라보고 호르몬치료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트랜스젠더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령안 중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102 의 3.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는 전면 철회되어야 함 (끝)**

3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7784>